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49 발의연월일: 2022. 11. 2.

발 의 자:한정애·강민정·강은미

김상희 · 김정호 · 문진석

민홍철 · 서영석 · 송옥주

윤미향 • 이성만 • 이원욱

장철민 · 최기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창신동 모자,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,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,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,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2조). 법률 제 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"홀로 사는 사람"을 "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고독사"	제2조(정의)
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	
과 단절된 채 <u>홀로 사는 사람</u>	<u>사회적 고립상태로 생</u>
이 자살・병사 등으로 혼자 임	활하던 사람
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	
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	
말한다.	